

'06. 2. 28(화)
제247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기획행정위원회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審 査 報 告 書

2006. 2. 28.
제247회 임시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2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6. 2. 22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곽연창)

가. 제안 이유

○ 기업도시건설지원 사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,
「공공기관이전지원단」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○ 분장사무 조정

- 건설교통국 : 기업도시 건설·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

○ 명칭변경

- 공공기관이전지원단 ⇒ 혁신·기업도시건설지원단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사무와 기업도시건설 지원사무를 통합 일원화하며,
- 또한 이의 사무를 추진하게 될 “공공기관이전지원단”의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게 “혁신·기업도시건설지원단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이에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“기업도시건설지원” 업무가 “혁신도시건설지원” 업무를 전담하는 건설교통국 소속 “공공기관이전지원단”으로 이관하게 되면서,
- “공공기관이전지원단”의 부서명칭은 『혁신·기업도시건설지원단』으로 조정하게 됨.
- 앞으로 지원단이 담당하게 될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
 - 먼저 기업도시건설지원업무로서 ▶기업도시건설 및 발전전략 수립, ▶참여기업 유치 투자촉진, ▶산업인프라 시설 대외활동 지원, ▶토지보상, 이주, 부동산 투기대책, ▶시설 조성 지원, ▶유관기관 활동 및 갈등관리 등을 맡게 되며,
 - 공공기관이전(혁신도시건설)지원 업무는 ▶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, ▶혁신도시 발전전략 수립, ▶대외협력 및 이전성과 공유, 갈등관리, ▶행·재정적 조기정착지원, ▶토지보상, 이주, 부동산 투기대책, ▶개발계획, 기반시설조성지원, ▶건축지원 및 각종영향평가 등을 담당하게 됨.
- 검토결과, 유사업무의 통합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증진하고 전담부서를 둠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이며 또한 바람직하다고 검토됨.

- 다만, 2006년 1월 1일 설치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, 또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심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좀더 사려깊은 업무추진이 필요하겠으며,
- 아울러 보다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기업도시 건설·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

부칙(2006. 1. 1, 조례 제2895호) 제2항중 “공공기관이전지원단”을
“혁신·기업도시건설지원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건설교통국)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부칙(2006. 1. 1, 조례 제2895호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한시기구)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12조(건설교통국)</p> <p>....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<u>기업도시 건설·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부칙(2006. 1. 1, 조례 제2895호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u>혁신·기업도시건설지원단</u>.....</p> <p>....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02조 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6조 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~③ (생략)

-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(생략)

제7조 (실·국·본부등 기구의 설치) ①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 및 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(생략)

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